

「2025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사업화(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의 판로 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업화(판로개척) 지원 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제품기술력을 갖춘 초기 창업자의 판로개척지원을 통해 유망 기술 창업기업으로 성장 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업화(판로개척)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5. 10. 31.(금)
- 접수기간 : '25. 7. 2.(수) ~ '25. 7. 9.(수)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중장년센터 입주기업 및 '23년도 이후 졸업기업
- 지원분야 : PPT제작, 마케팅/판로, 시제품 제작, 지재권 출원 지원 등
- 지원규모 : 총 7,500천원, 3개사 내외(기업당 2,500천원 이내)

3 지원 세부 내용

- 지원 분야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
| PPT 제작 | • IR자료, 기업 홍보자료 제작 등 - IR 자료, 기업소개서, 투자 제안서 등 기획 및 디자인 포함 PPT자료 |
| 마케팅/판로 | •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작 지원 - BI/CI 디자인, 포장 패키지 디자인, 상세 페이지 제작 등 • 제품 홍보·광고 콘텐츠 제작 지원 - 홍보영상, 시연영상, 쇼츠·릴스,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
| 시제품 제작 | • IR자료, 기업 홍보자료 제작 등 - 시제품 설계·제작 비용 지원 |
| 지재권 출원 | • 국내 지재권 출원 비용 지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 지원 |

○ 지원 분야별 상세 지원 조건 및 기준

| 지원분야 | 구분 | 조건 / 기준 |
|------------|------|--|
| PPT제작 | 지원내용 | ◦ 사업홍보 및 IR 홍보자료 제작 |
| | 지원범위 | ◦ 기업당 1건, 최대 15페이지 이내 제작 ※ IR·투자용 자료의 경우, 최대 20페이지 가능 |
| | 제외대상 | ◦ 일회성·단순 자료 제작은 제외 ※ 당해년도 사업계획 자료, 지원사업 발표 자료 등 불가 |
| 마케팅/ 판로 | 지원내용 | ◦ 브랜드 디자인(CI/BI 개발) ◦ 포장 패키지 디자인,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등 ◦ 홍보/시연영상, 쇼츠·릴스,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
| | 지원범위 | ◦ BI/CI 최종 결과물 2안 이상 제시 ◦ 상세페이지 제품 1건 기준, 최소 3~5 스크롤 분량 ◦ 기업/제품 홍보영상 길이 1건당 40초 이상 ◦ SNS 콘텐츠 영상(15~30초), 이미지(3컷 이상(표지제외)) |
| 시제품 | 지원내용 | ◦ 시제품 설계·제작 비용 지원 |
| | 지원범위 | ◦ 결과물의 수량,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시제품, 작업일지 등 구체 자료 제출 필수 |
| | 제외대상 | ◦ 단순한 재료 구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 ◦ 결과물이 없는 소모성 자재(예: 소진형 재료)만의 구매 |
| 지재권 출원 | 지원내용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 지원 |
| | 지원범위 | ◦ 수수료, 변리사 대행료 등 지원 ※ 출원·등록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제외대상 | ◦ 성공 수수료 및 관납료 ◦ 출원·등록 명의 불일치 건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출원등록 필수 |

※ 총 지원금(2백 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항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

※ 지원금 내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ex. 용역대금 부가가치세 10%)

※ 지원기업 선정 확정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소급적용·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구분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
| 판로개척 지원사업(입주기업) | 100% | 100%(부가세 미포함) |
| <p>• 총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구성 예시(판로개척) : 정부지원금(2,500천원) 2,500천원(100%) + 부가세 10%(250천원) 별도 기업부담 = 최대 2,750천원</p> <p>• 총 협약(사업비)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p> | | |

4 신청·접수안내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5. 6. 25.(수) ~ 7. 9.(수)
 - 신청기간 : '25. 7. 2.(수) ~ 7. 9.(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담당자 E-Mail(mj53@jcia.or.kr) 접수 (☎ 061-280-7499)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 서류 각 1부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공동서류 (필수) | 1.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날인 必) | 첨부파일 참고 |
| | 2.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 |
| |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날인 必) | |
| | 4.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용역사) 각 1부 | 공고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 개별서류 (해당 시) | 6.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예비창업자 제외) | 요청 시 |
| | 7. 기타 진흥원 요청자료 | |

※ 신청서는 한글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필수. 서류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 필수

5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중장년센터 입주기업 및 '23년도 이후 졸업기업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5.7.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5.7.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받고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6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① 요건검토 :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등 검토

② 평가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기업)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함

○ 평가기준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
| 선정 평가 | - 지원분야와 기업과의 연계성 | 20 | 70점 이상 “선정” |
| | - 지원 금액의 적정성 | 20 | |
| | - 수행과제 완료 가능성 | 20 | |
| | - 결과물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20 | |
| | -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20 | |
| 합계 | | 100 | |

○ 최종선정 :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 선정

○ 기타사항

- 사업수행 적격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70점 이상 기업에 한함)

○ 추진일정

| 구분 | 절차 | 일정 | 주요내용 |
|-----------------------|----------|------------------|-----------------------------|
| 공고 | 사업공고 | 6.25.(수)~7.9.(수) | 진흥원 및 센터 홈페이지 |
| 접수 및 선정 (공통) | ↓ | | |
| | 신청서 접수 | 7.2.(수)~7.9.(수) |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
| | ↓ | | |
| | 선정평가 | 7.16.(수)예정 | 적정성 검토 및 신청서 평가 |
| | ↓ | | |
| | 선정 통보 | 7.18.(금) 예정 | 선정통보 및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 사업 수행 | ↓ | | |
| | 협약체결 준비 | ~7.22.(화) |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
| | ↓ | | |
| | 협약 체결 | 7.23.(수) 예정 | 협약체결 |
| | ↓ | | |
| | 과제수행 | 협약일~10.31.(금) | 과제수행 |
| 사후관리 | ↓ | | |
| | 결과보고서 접수 | 11.7.(금)까지 | 결과보고서, 사업비 집행 실적보고서 등 제출 |
| | ↓ | | |
| | 최종평가 | 11. 14.(금) 예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성공' |
| 사후관리 | ↓ | | |
| | 지원금 지급 | 11월 말 | 사후지급 (대행업체에 비용 지급) |
| 사후관리 | 성과관리 | '25. 12월~ | 성과보고서 및 증빙 제출 |

※ 추진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는 고발 조치됩니다.

- '24~25년 창업진흥원 및 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세부과제는 신청불가하며, 중복 신청이 확인된 경우 탈락 및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동 사업과 타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고 진흥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사업비 교부 위험)

8

문의 및 연락처

- 사업 신청 문의 : ICT융합본부 AX지원팀 김민지 선임 (☎061-280-7499)

끝.